

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5]

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(제17조 관련)

구분	정보공개서 기재사항	변경 등록 또는 신고 기한
변경 등록 사항	별표 4 제1호: 전체 별표 4 제2호: 가목, 나목(계열화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), 라목, 마목(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) 및 사목 별표 4 제3호: 나목 별표 4 제4호: 전체	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
	별표 4 제5호 및 제6호: 전체	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
	별표 4 제2호: 다목, 바목 별표 4 제3호: 다목부터 마목까지	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. 다만,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계열화사업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변경 신고 사항	별표 4 제2호: 나목(계열화사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), 마목(대표자 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) 별표 4 제3호: 가목, 바목 및 사목 별표 4 제7호 및 제8호: 전체	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